

# 목회자 세금납부와 기독교윤리

유경동

##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법적인 관점
3. 법적인 쟁점에 대한 대안: 법과 종교의 조화
4. 도덕적 관점
5. 도덕적 쟁점에 대한 대안: 체계와 생활세계의 조화
6. 신학적 관점
7. 나가는 말: 이웃의 사제로

## 1. 들어가는 말

박재완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이 2012년 3월에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발언 이후, 년 내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리라는 추측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월말 세제개편안에 성직자납세를 포함시키지 못하고,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되었다.<sup>1)</sup> 기재부는 과세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성직자 과세의 명분을 찾고 있는

1) 필자는 본 글에서 개신교의 경우 ‘목회자’로 사용하며, 종교 전반의 경우 ‘성직자’로 사용한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향후 성직자과세를 시행하고, 이어서 수익사업에 대하여서만 과세인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성직자과세’는 2006년 4월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가?”라는 질의로 촉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공론화되기 전부터 사실 종교계 내에서는 꾸준히 자발적인 근로소득세 납부운동이 있어왔다. 현재 개신교 9개 교단으로 구성되어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과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표방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목회자 과세운동을 범 교단적인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방향을 잡고 있으며, 보수 개신교계를 대표하는 한국교회언론회에서도 납세라는 국민의 의무를 성직자들이 반대할 사안이 아님을 근래 밝혔다. 가톨릭도 1994년부터 소득세 납부를 결의하였고, 최근에는 ‘성직자 납세원칙 가이드라인’과 ‘급여지급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개신교 내 한기총은 목회자에게 근로소득세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으며, 조계종도 과세평등에 의한 ‘종교인 소득세’가 아닌 ‘종교인 근로소득세’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동안 종교단체는 순수한 종교행위를 전제로 한 ‘비영리단체’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법인세나 증여세 등의 면제혜택을 받아왔으며, 성직자의 소득 또한 영적봉사에 대한 예우금이나 봉사비로 이해되어왔다. 현실적으로 성직자의 80% 정도가 면세점(세금을 면제하는 기준 한도) 이하로 추정되기 때문에, 과세의 실효성도 의문시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 의무 차원에서 공평과세는 종교단체나 성직자도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일부 종교단체의 탈세의혹과 현금과 연루된 성직자의 부도덕성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재정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실정법 차원에서의 법의 형평성과 종교적 차원에서 도덕적 규범 회복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이 더욱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종교인 과세’ 문제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납세의 의무’ 사이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돌로 비쳐질 수 있다. 그동안 종교단체와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는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불문율이었기 때문에, 과세라는 법의 형식적 논리는 자칫 종교에 대한 국가의 억압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대다수의 면세점 이하 성직자들에 대한 납세의 절차가 법적으로 미미한 상황에서 과세는 마치 성직자들이 일부러 납세를 회피한 것처럼 종교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수 있다. 그러나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국가공동체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정직한 납세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국민의 의무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국가가 국민의 납세에 대한 책임과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한, 굳이 회피할 명분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목회자 세금납부 쟁점사항은 현재 사회적으로는 크게 법적인 관점과 도덕적인 관점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이 쟁점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 기독교윤리학적 관점에서 목회자 과세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개혁주의 전통에서 세금의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지 짚어 봄으로써, 향후 목회자 과세 문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법적인 관점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쟁도 입장에 따라서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성경의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근거로 크게 두 가지로 그 쟁점이 나뉘지는데, 하나는

국가의 조세정책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직자의 종교 활동에 대한 해석의 차이다. 그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국가의 조세정책에 성역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조세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둘째, 종교인의 경우 예외로 보는 관점이 충돌하고 있다.

조세평등의 일례로 국제사회에서는 최근 재정난을 겪은 이탈리아가 경기부양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세 감면정책을 추진하면서, 교황청과 가톨릭교회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지난 2월에 고시하였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세수확대를 위해 가톨릭교회에 대한 면세혜택을 2013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내용을 포함한 경기부양안이 발표되었다. 가톨릭교회는 지금까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호텔 내 예배실과 같이 수익은 있지만 비상업용으로 분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

이탈리아 최고행정법원은 가톨릭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과세안을 부결하였으나, 정부는 "부동산세 납부에는 예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sup>2)</sup> 지난 1929년 교황청과 무솔리니 정권 사이에 맺어진 라테란 조약 이후 교황청 소유의 '종교 기능' 부동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재정 위기에 처한 이탈리아 정부가 '신성불가침 영역'에 과세를 부과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종교인의 과세에 대하여 찬반이 나뉘어져 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명시된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조문에 근거하고 있다.<sup>3)</sup> 그러나 교회가 종종 재정이

2) 아시아경제, 2012.10.11

3) 이하 본 글에서 인용되는 법조문은 법제처의 ‘법령’을 참고하였다.

<http://www.moleg.go.kr/main.html>

불투명하다고 인식되는 상황에서 과연 교회가 특수계급의 형태인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직자 납세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교육기관과 시민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의 경우는 재무회계에 대한 정보를 공개 하지만, 종교인과 종교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재정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한편 헌법 20조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내용에 따라서 종교단체의 지위와 종교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종교나 종교인을 세금과 같은 의무로 간섭할 수 있는지도 문제시 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8조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종교인 소득세 부과를 관행적으로 면제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에 대한 회계 관련 제도도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소득세법 34조에는 종교단체를 공익법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건물신축, 현금, 기부금, 그리고 정관상의 선교 봉사 교육과 같은 비영리의 목적에 쓰이는 경우 비과세이고, 교회건물을 임대하거나 수익 사업체의 설립인 경우는 과세이다. 성직자 과세에 대한 문제 중에 80%가 미자립의 수준으로 추정할 때, 2009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74만원, 연간 소득 2,088만원으로서 면세점 이하의 종교인들이 신고할 경우에 면세되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가 별로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지배적이다.

둘째, 성직자의 종교활동과 연관된 행위를 근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봉사로 볼 것인지 그 입장이 나뉘어져 있다. 소득세법 12조(비과세 소득)와 13조(세액의 감면)를 보면,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항은 없지만, 목회자의 소득도 근로소득이라고 보는 관점과 근로가 아닌 종교적 봉사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관점이 대립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근로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목회자에게만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납세를 이미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

다. 한편 일반적으로 교단법은 목회자에게 주는 생활비가 월급이 아니라 목회자의 생계를 위하여 주는 사례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볼 때는 많은 나라가 예외 없이 종교인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세가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목회자를 공무원 대우의 급여와 함께 세금이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목회자는 소득세가 있고, 사회복지지원에서 세금을 낼 경우 상응하는 복지 혜택이 따르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톨릭의 경우도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서울 교구는 예결산을 공개하고 있다. 조계종에서도 원칙적으로 세금납부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으며, 현재 개신교 내 일부 목회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기하성(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은 교단차원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하고 있다.<sup>4)</sup>

목회자 세금납부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된 논리는 성직자는 종교적인 봉사에 해당하며, 근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납세의 의무를 다한 신자들의 헌금을 통하여 교회 사례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헌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또한 목회자도 사례비를 교회 헌금으로 드리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목회자가 부동산 소유나 재산 상속, 강의, 책 저술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을 일방적으로 내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성직자 납세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목회자의 근로가 단지 생활비의 수준을 넘어서 목회자간 소득의 극명한 격차를 보이는 사례가 많으므로 순전한 영적인 봉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비영리단체의 구성원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상황이므로, 목회자의 경우도 동일한 과세

4) 목회자와 같은 종교인들에게는 관행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관행의 기원을 일제시대로 거슬러 가서 3·1 운동 이후 종교인들이 일제에 협력하는 대가로 근로소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종교법인에 대하여서는 다양한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에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매기는 ‘이중과세’의 경우가 아니라고 보는 주장이다.

### 3. 법적인 쟁점에 대한 대안: 법과 종교의 조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성직자과세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필자가 위와 같은 세법의 문제와 연관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서에 나타나는 ‘가이사’의 것에 대한 공적 영역에서의 국가의 정의와 교회의 책임, 그리고 사회 개혁에 관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과세를 다루는 법의 정의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가의 법과 정치, 그리고 종교와 연관된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해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정의로운 법의 형평성이 논란이 될 때,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법의 적용이 달라져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법적 관행과 명확성, 항상성과 국민적 합의에 근거하는데, 이 또한 매우 모호한 것을 알 수 있다. 헌법적 관습이란 성문헌법국가에서 헌법개정에 의해서만 통제되며, 관습헌법이란 불문헌법국가가 취하는 법으로서 헌법개정에 의해 통제될 수 없다. 헌법관습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성문헌법의 관습에 근거하여 문서로 존재하는 이 법을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관습적인 보편적 관점에 근거하게 된다. 따라서 관습헌법은 특별한 예외가 아니고서는 성문헌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만 갖게 되는 것이다. 논쟁이 되는 것은 법의 해석에 있어서 관습 또한 불분명하며, 무엇이 관습의 기준이 되는가의 문제도 복잡하다는 것이다. 법률의 효력을 갖는 헌법적 관습과 관습헌법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헌법적 관습이라는 것이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지의 여부도 모호하다. 왜냐하면 관

습자체의 정의가 모호한데, 명확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선 사형제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2010년 2월 25일 합헌 5명, 위헌 4명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이는 1996년 당시 합헌 7명, 위헌 2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형제에 대한 법의 판단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2007년 12월 기준 사형집행 중단 10년을 맞은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현재의 양극화된 분위기가 반영하듯이, 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갈등이 양극화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5)</sup>

다른 예를 들어, 양심적 병역기피자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는 위헌 소송의 경우,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둘 다 보장되어있는데, 양심과 국방의 의무 중에서 어느 조항이 다른 조항보다 우선한다는 법이 없다. 현재는 헌법관습의 입장에서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가 우선한다며 합헌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헌법관습인 성문헌법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관습적인 법 해석을 중시한 것이다.<sup>6)</sup>

그러나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2006년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확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절차에 따르지 않은 수도이전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sup>7)</sup>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추진하던 국가의 사업에 대하여 반대하는 논리전개에서 과거의 결정과 달리, 헌법상의 기본원리나 성문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불문헌법에 해당하는 관습헌법을 적용하여 논란을 불리일으켰다.

5)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판례를 참고하였다.

<http://ecourt.ccourt.go.kr/home/search/sch.jsp>

6)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례를 참고하였다.

<http://ecourt.ccourt.go.kr/home/search/sch.jsp>

7) 이하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에 관한 판례를 참고하였다.

[http://ecourt.ccourt.go.kr/home/search/sch.jsp?query=신행정수도&coll=ALL&m\\_navi=1&sch\\_query\\_type=sch](http://ecourt.ccourt.go.kr/home/search/sch.jsp?query=신행정수도&coll=ALL&m_navi=1&sch_query_type=sch)



위의 몇 가지 예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민주주의 이념에 근거한 사회국가를 형성함에 있어서 법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정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논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사회의 안정과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매우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성직자 과세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정치적 영역에서의 법문화와 영성의 영역으로서의 종교적 규범과 문화적 내용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양자 사이의 다양한 입장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즉,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관습으로 과세에서 제외한 성직자들에게 분명한 이유 없이 과세를 한다면, 그것은 법의 정의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구분 종교별	2008년 단체수 (개)	2008년 교당수 (개소)	2008년 교직자수 (명)	신도수(명)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05.11.1)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95.11.1)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85.11.1)
불교	103	21,935	49,408	10,726,463	10,321,012	8,059,624
개신교	124	58,404	94,615	8,616,438	8,760,336	6,489,282
천주교	1	1,511	14,597	5,146,147	2,950,730	1,865,397
유교	1	1,049	300	104,575	210,927	483,366
천도교	1	108	1,500	45,835	28,184	26,818
원불교	1	561	1,886	129,907	86,823	92,302
대종교	1	22	22	3,766	7,603	11,030
그 밖의 종교	38	6,710	201,488	197,635	232,209	175,477
계	270	90,300	363,816	24,970,766	22,597,824	17,203,296

문화체육관광부의 2008년 『한국의 종교현황』을 보면, 당시 기준으로 성직자(교직자)수는 363,816명이 되며, 270여 단체에 90,000이 넘는 교당수를 가지고 있다.<sup>8)</sup> 개신교만 하여도 6만여 교회에 9만 5천명의 목

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모나미, 2008), 9. 이 자료에 따르면 단체수, 교당수, 교직자수는 2008년 12월 20일까지의 각 종교 단체의 협조 자료에 나타난 수치를 더한 것이다. 단, 천주교는 2007년 12월 31일 자료이며, 개신교는 2007년 12월 시점을 기준으로 각 총회에 보고된 경우를 합한 수치이다.

회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많은 숫자의 성직자들에게 과세의 요구가 있으려면, 지난 100여년이 넘는 개신교 역사 속에서 왜 성직자들은 제외 되었으며, 왜 현 시점에서 과세가 필요한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 성직자 과세의 법이 실현되기 위하여서는 법의 안정성을 통하여 정의를 확보하고, 동시에 성직자들과 국민들에게 평화와 질서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성직자과세는 과세평등의 정의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법의 원리와 동시에 종교 활동을 통하여 영적가치를 수행하는 성직자들의 정신적 가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법이나 종교는 각각 특유한 공동체, 또는 조직 및 규범을 형성함으로써 인간 개인의 삶에 각각 지대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법과 종교의 신념과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즉, 성직자 과세와 연관된 종교와 법의 문제는 기존의 법체계 속에서 왜 성직자들이 면제되었는지, 그 종교 문화적 배경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왜 이 시기에 성직자 과세가 필요한지, 법의 체계 안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종교 내 규범들이 이러한 법적 측면을 어떻게 수용하며, 나아가 종교와 법의 제도화, 그리고 실제 적용의 실천적 측면의 상호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성직과 과세 문제에 대한 종교와 법의 내면화가 성숙하게 조화되지 아니하면, 목회자의 세금문제의 사안은 끝까지 쟁점으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 4. 도덕적 관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잠 30:8)

성경의 잠언기자는 신앙인은 물질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성직자들의 삶도 경제적 부를 추구하지 않고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사실 돈과 거리가 먼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쟁점은 단순히 법적인 관점을 넘어서 도덕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교회의 재무행정의 투명성에 관한 의혹에서 생기지만, 특히 도덕적 문제는 목회자가 특권층으로 인식되고 현금유용 의혹을 받는 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에 허위로 기부금이나 현금을 냈다고 속이고 연말정산 때 기부금증서를 받아서 공제하는 일들이 금융당국에 의하여 적발되는 사례들은 사회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 일례로 과거 90년 대 후반 D생명 회장의 외화밀반출 사건이 있었을 때, 계약자들의 돈 수천억 원이 불법으로 빼돌려진 것이 ‘교회기부’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추적이 수포로 돌아간 적이 있는데, 당시 자칫 기독교가 탈세의 온상이 아닌가 하는 깊은 의혹을 사게 되었다.

교회 현금의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사용 출처와 사용목적과 용도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참고로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지된 재판 중 ‘현금’과 ‘교회’와 연관된 전문 내용이 50건이 넘는 것으로 보아 교회의 현금과 연관된 시비가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sup>9)</sup>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로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회계 공개를 투명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연말에 빔 프로젝트나 간략한 결산서 등으로 대신하여 투명한 회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회 내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대안으로 목회자나 종교법인을 위한 회계처리기준을 세우고, 해당 내용을 정부당국에 신고 및 공시하며, 규모가 큰 종교법인은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자는 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필자는 종교계 일각에서 일어나는 소수의 도덕적 문제를 마치 전체의

9) ‘교회’ 또는 ‘현금’과 연관된 전문 내용을 참고하였다.

<http://www.law.go.kr/precSc.do?menuId=5&p1=&subMenu=1&nwYn=1&query=>

문제로 일반화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성직자나 종교단체의 도덕적 문제는 결국은 법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지만, 과세의 문제를 가지고 도덕적 사안으로 접근하기 위하여서 하버마스(Habermas)의 이론을 통하여 분석하여 보자.<sup>10)</sup> 특히 그의 이론을 통하여 법과 종교의 조화를 사회의 규범적 ‘체계’와 ‘생활세계’라는 패러다임을 통하여 적용하여 보고자 한다.

## 5. 도덕적 쟁점에 대한 대안: 체계와 생활세계의 조화

이 ‘체계’와 ‘생활세계’라는 두 패러다임은 하버마스에게 있어서 사회 실천 전략의 근거가 되며, 공공권력의 역사적 형성과 그 변화를 설명하는 근본적인 틀로 이‘해될 수 있다. ‘체계’란 경제 행정 등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서 화폐와 권력을 매개로 국가 정부 등이 행위체계를 이루고, 한편 자본과 권력은 그 행위체계의 매개가 된다. 중요한 점은 이 ‘체계’는 일상적인 개인들 간의 담화를 매개로 형성되는 ‘생활세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생활세계는 관습, 가치, 문화, 규범 등으로서 그 사회의 관심과 방향을 나타내는 상징을 만들어 내며, 의사소통행위 참여자들의 배후에 존재하면서 참여자들의 소통을 통한 집합적 신념의 기초라고 정의 될 수 있다.

그러나 근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활세계의 구조적 변화는 복잡한 사회의 발전에 점점 유리되어서 의사소통 행위로부터 분리되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이는 결국 체계와 생활세계의 분리라는 현상을 수반하게

10) 윤평중,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교보문고, 1990), 127-128. 위의 하버마스 인용은 필자의 시민사회에 대한 선행연구 내용 중 별도의 인용구 없이 일부를 인용하였다. 재인용, 유경동, 『한국사회와 기독교정치윤리』 (한국기독교연구원, 2005, 개정판), 185-189.

되는 것이다. 일면 사회적인 발전이 체계의 분화를 통하여 복잡성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는 효과가 있고, 생활세계의 분화는 그 합리성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장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면, 국가와 사회의 조정 능력을 대변하는 분야가 경제와 관료 행정이 되며, 생활세계의 전통적인 세계관이 해체되면서, 체계와 생활세계의 상호 작용은 점점 분리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생활세계는 차츰 ‘효율성’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되는 자족적인 하위 체제로 전환하여 가게 되며, 경제와 행정의 조정능력은 대상에 대한 도구적인 제어로 전념하게 되고, 따라서 생활세계의 행위자도 결국 전술적인 조작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버리고 마는 것이다. 결국 ‘생활세계의 식민화(die Kolonialisierung der Lebenswelt)’를 초래하는 것이다.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이 중지되면, 경제와 자본의 논리는 국가권력으로서의 체계의 힘이 이성적인 담화 형성의 과정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게 된다. 특히 체계의 복잡성은 전통적인 생활 형태를 휩쓸어 버릴 뿐만 아니라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적 하부구조까지 침범하게 된다. 결국 경제나 관료 같은 도구적 하위 체제들이 생활세계의 영역에 침범하게 되면, 체계와 생활세계의 분리를 통하여 ‘생활세계의 식민화’로 악화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기에 대하여 하버마스는 대중 민주주의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과 자본주의 경제의 기능적인 조건들 사이의 갈등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정당성’과 ‘정통성’, 그리고 ‘동의’를 통한 시민사회 형성에 기대를 걸었다. ‘정당성(legitimacy)’이란 도덕적으로 확정된 사회적인 자기 정체성의 사회 통합적인 보존이며, ‘정통성(legitimation)’이란 구성된 가치들을 실현시키는데 적합한 절차와 연관이 되어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필자가 중시하는 것은 ‘종교인 과세’ 문제는 도덕적 규범이 요구하는 ‘사회질서 유지와 통합’의 차원에서 볼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세상은 사회 정치적 영역에서 실정법 차원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법문화’와 인간의 정신과 영성의 영역으로서의 ‘신앙의 가치’가 어우러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이나 종교는 각각 국가, 교회, 그리고 이 둘이 어우러진 ‘사회적 규범’을 형성함으로써 인간 개인의 삶에 각각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정법 차원에서도 종교문제와 연관된 민형사상의 법리적 사건구성 요인을 분석할 때, 종교의 신념과 가치도 함께 고려되는 이유가 바로 이점에 있다.

중시하는 점은 사회적 정의나 교회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지만, 이 양자가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국가가 법의 기능을 통하여 성직자 과세라는 절차상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성원들이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도덕적으로 규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사회적 ‘정당성’의 요구이다. 그 이유는 국가의 법적 제도가 사회의 도덕적 규범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종교의 자유’는 순수한 종교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부과되는 기본권으로서 정당한 시민의 권리이다. 한편, 영토를 근거로 한 근대 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국민의 주권과 안정을 보장하는 국가의 정통성도 국민의 정당한 지지가 필수적이다. 국가의 도움 없이 ‘종교의 자유’를 상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종교가 지지하는 통합적인 도덕적 규범이 없는 국가 또한 상상하기 어렵다.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지위가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는 한, 세금은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는 종교인에게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한 국가는 ‘종교인 과세’라는 쟁점에 있어서도 그동안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종교단체와 성직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안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과정과 수렴을 통하여 공익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가와 종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하버마스의 이론을 통하여 목회자의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두 가지 점이다. 하나는 목회자의 세금문제가 ‘체계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동시에 목회자 세금의 문제는 기독교의 입장에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덕적 사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교회와 목회자의 세금 문제를 체계나 정권을 위한 정치정략적인 논리로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 교회와 성직자의 고유한 정체성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특히 한국의 근대화 과정 중에 형성되어 왔으며,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이상과 복음의 사명을 교회와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한, 목회자의 삶을 단순히 체계의 부분으로 인식하여서도 안 되며, 목회자의 양심과 신앙의 행위를 체계의 형식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일부 교회의 탈세 의혹과 교회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도덕적인 문제들을 여론몰이식으로 몰고 가서 특정 계층 간에 위화감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형태로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과세 문제를 통하여 목회자의 동의와 교회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적 정치 역량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목회자의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점은 앞에서 지적한 정당성과 그리고 정통성의 문제가 교회와 목회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관습의 형태로 확보된 “성직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교회와 성직자의 정통성만 주장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내 성직자 세금의 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성직자는 사회적 책임과 도덕의 의무를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회 보전과 통합이라는 정당성은 성직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직자와 국가 간의 세금문제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하여서도 안 되고, 동의를 과정에서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되며, 성직자와 교회 또한 사회적 규범이 요구하는 정

당성을 외면하지 말고, 사회적 규범보다 훨씬 앞서는 도덕성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목회자의 세금을 통하여 복지사회를 건설하려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만 한다면, 희생과 헌신에 근거한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 처럼 몸으로 보여주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국가의 법이나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라는 이원론적 입장에서 보지 말고, 세금이 국가와 기독교의 온전한 통합과 연대로 나아갈 수 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금납부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 6. 신학적 관점

네가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 3:19)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세금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먼저 중시하여야 하는 것은 돈에 대한 기독교의 정신을 규명하고 이 세상에서 감당하여야 할 책임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흠으로 돌아갈 인간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허탄한 목적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노동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여야 할 것이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돈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적이 거의 없었고 보아도 무방하다. 사실 교회 역사 속에서 취하여진 개혁이라는 내용도 많은 경우 교회가 세상의 이익과 연관하여 취한 분열이 많았다. 리차드 니버(Richard Niebuhr)는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과의 타협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였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위선’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교회의 과제는 이러한 위선에 대한 ‘윤리적 자각’과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교회의 ‘개혁’에 관한 것이다. 특히 교회의 위선은 거짓된 복음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개혁은 매우 중요하다.<sup>11)</sup>

세금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독교는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스스로 도덕적 위상을 재고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개혁의 사안에 직면하면, 그동안 나름대로 ‘교파나 교리’분열이라는 모습을 통하여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일면 개혁의 요소도 있었지만, 기층 사회가 제공하는 정치 경제적 토대위에 종교적 ‘계급주의’를 고착화하며 교회의 권력 지향적 이기주의를 합리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회가 제공하는 정치나 경제적 이익에 교회나 성직자는 종속되고 만다.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사안을 단지 법의 해석이나 도덕적 잣대를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의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현대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직자는 무엇보다도 성직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재정향(reorientation)하여야 할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삶은 세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음을 지적하고 있다(막 1:38). 주님은 제자들에게 금이나 은을 소유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으며(마 10:9),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옳지 않음을 제자들도 각성하고 있었다(행 6:2). 성직자의 본연의 자세는 모든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영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적인 일로부터는 자유 할 수밖에 없으며, 부를 소유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았다.<sup>12)</sup> 특히

11) Richard Niebuhr, *The Kingdom of God in America* (Harper, 1959), 88. 니버의 사상을 통한 한국교회의 문제는 필자의 선행연구 내용을 옮겼다. 재인용, 유경동, 『한국기독교 사회윤리의 쟁점과 과제』(감리교신학대학교 출판부, 2006), 88-89.

12) 이하 해석은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의 아퀴나스의 영문판 신학대

성직자들은 부요하신 이로서 일부러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늘 기억하여야 한다(고후 8:9).

아퀴나스는 십일조는 세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노동의 임금에도 속하지도 않는다고 보았으며, 십일조를 드리기 전에 세금이나 샅을 먼저 공제하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십일조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았는데, 하나는 십일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또 다른 하나는 십일조로 드려지는 현물에 대한 것이다. 먼저 십일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성직자가 성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마땅한 것이며, 이는 영혼을 돌보는 사역자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십일조로 드려지는 현물은 평신도면 누구든지 참여하여야 할 신앙의 몫인 것이다.<sup>13)</sup>

아퀴나스는 첫 예물을 드리는 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제사장들은 첫 열매를 드리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보다 직분이 낮기 때문에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는 구약의 민수기 18장 말씀을 예로 들었다. 주목할 점은 레위인들은 십일조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부분이다(민 18:26). 같은 이유로서 성직자들은 십일조를 교황에게 드려야 하고, 교황은 그 현금으로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아퀴나스는 해석하였다.<sup>14)</sup>

위와 같은 아퀴나스의 입장은 후에 중세기 가톨릭의 부패로 그 빛을 잃게 된다. 칼빈(John Calvin)과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얼마의 돈을 내고 영혼을 살려고 하였던 당시 교황청의 도덕적 문제에 대하여 개혁의 기치를 높였다.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 사회의 질서를 책임질 당시의 체제

---

전을 참고하였다. Thomas Aquinas, "Whether Christ should have led a life of poverty in this world?" *Summa Theologica* (Benziger Bros. edition, 1947) <http://www.ccel.org/ccel/aquinas/summa.html>

13) Thomas Aquinas, "Whether men are bound to pay tithes of all things?" 위의 책.

14) Thomas Aquinas, "Whether the clergy also are bound to pay tithes?" 위의 책.

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을 의무라고 보았다. 이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며, 동시에 국가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는 것은 신앙인의 책무였던 것이다.

루터는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의 질문을 받은 예수께서 관세와 국세를 세상임금들에게 내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세금을 내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에 관한 것으로서, 이 세상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한 모범인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명이다. 그의 관점에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법과 권위에 복종하는 이유는 이것에 의하여 의로워지기 위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앙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이다. 세상의 권위를 따르는 것은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의 정신에 근거하며, 헌신적인 사랑의 정신을 내포하는 것이다.<sup>15)</sup>

루터는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당시 왕정시대에 교황이 독일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었던 본래의 이유는 터키와 이교도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상기시켰다. 따라서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 세금을 내었는데, 그 후 수백 년이 지나도록 교황청은 세금을 본래의 목적과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거두고, 교황청을 짓는 일에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sup>16)</sup>

칼빈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세금은 순전히 국가의 질서를 위한 것이며, 세금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정당한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요셉, 다윗, 히스기야, 요시아, 다니엘, 여호스밧과 같은 신앙의 인물들과 왕들이 신앙의 경건성을 통하여 공적헌금이나 기금을 자유롭게 모금한 사실에 대하여 강조하였

---

15) Martin Luther, *First Principles of the Reformation or the Ninety-five Theses and the Three Primary Works* (London: John Murray, 1883), [http://www.ccel.org/ccel/luther/first\\_prin](http://www.ccel.org/ccel/luther/first_prin)

16) 위의 책.

다. 에스겔서 48장 21절에는 군주에게 많은 땅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칼빈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로마서 13장 6절의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금을 내야 할 기독교인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관리들은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탕진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국민의 피’와 같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sup>17)</sup>

루터의 당시 관점을 현재의 목회자의 납세문제와 연관하여 볼 때, 만일 국가가 기독교의 활동과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여 주고, 한국 내 기독교인의 인권과 생명을 지켜준다면, 세금납부의 문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아울러 세금을 통하여 기독교문화의 유산을 보전하는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국가의 예산을 기독교가 사용할 때, 정교유착의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국가가 교회의 성지 보전을 위하여 국가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 관련 복지관, 기독교 관련 교도소, 교회연관 유치원 등의 다양한 교육시설에 예산을 주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sup>18)</sup>

종교적 신념이 사회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막스 베버(Max Weber)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루터의 ‘직업소명설’과 칼빈의 ‘예정론’이 자본주의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sup>19)</sup> 베버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져온

17) John Calvin,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Henry Beveridge),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http://www.ccel.org/ccel/calvin/institutes>

18) 한 예로 기독교 성지화 사업의 경우, 전남 광주 양림동 일대에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20만 제곱미터 부지에 국비와 시비 254억이 투입된 선교 유적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여수 애양교회, 영천 자천교회, 최초의 성경전래지 마령진 등에서도 국가 예산이 들어간 기독교 성역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목회자의 세금문제를 교회의 탄압이나 종교 자유의 억압으로 볼 수는 없다. 참고) CTS 뉴스, 2112.4.24

[http://www.cts.tv/news/news\\_view](http://www.cts.tv/news/news_view)

칼빈주의에서는 개인과 윤리간의 분열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그 이유로써 칼빈주의의 윤리적 공적주의와 직업개념이 그 특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루터에게는 청교도 상인에게서 발견되는 금욕주의와 칼빈에게는 철저한 구원이라는 자기 확신을 보장하여 주는 직업노동이 자본주의의 정신이었다.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공적주의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헌신을 통하여 자본주의가 발전되었다고 볼 때, 여기서 세금납부는 기독교정신과 상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종교개혁정신에 나타나는 세금의 문제는 신앙의 자유와 연관이 되어있다. 이는 성직자에게 족쇄가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루터가 강조한 참된 믿음에 대하여 주목하여야 한다. 그가 강조하는 믿음이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를 향한 자신의 변화이며 사회에 대한 책임이다. 루터는 불에서 빛과 열을 분리할 수 없듯이, 바른 교회는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교회 안의 것과 밖의 것으로 구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sup>20)</sup> 바른 기도와 진정한 회개,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은 기독교가 회복하여야 할 종교개혁 신앙의 본질인 믿음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세금을 통하여 사회의 책임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세금 논쟁은 단지 세금의 법적 도덕적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세금에 대하여 얼마나 신학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달려있다고 본다. 윤리와 직업에 대한 인식이 공적 영역에서 분리되지 않고 책임의 의무로 다가올 때, 목회자의 세금은

---

19)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8)

20) Martin Luther's Definition of Faith: An excerpt from "An Introduction to St. Paul's Letter to the Romans," Luther's German Bible of 1522 by Martin Luther, 1483-1546 Translated by Rev. Robert E. Smith from DR. MARTIN LUTHER'S VERMISCHTE DEUTSCHE SCHRIFTEN. Johann K. Imischer, ed. Vol 63 (Erlangen: Heyder and Zimmer, 1854), 124-125. [EA 63:124-125] August 1994.

오히려 기독교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7. 나가는 말: 이웃의 사제로

한국 사회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로 대변되고 있다. 집이 경제적 수단으로서 부의 상징이 되던 시절은 지나갔다. 국가의 주택정책도 심각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집을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하였던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독교계는 ‘처치 푸어(Church Poor)’로 힘들어하고 있다. 성전을 지어서 계획하였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 건축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매물로 나오는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형/소형 교회, 자립/미자립 교회, 그리고 도시/지방 교회로 나누어지는 교회의 양극화의 문제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세금의 사안이 목회자의 사명과 존엄성을 물질적 잣대로 평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목회자의 세금문제는 목회자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이를 신앙의 규범적 틀 안에서 배려하는 교회와 교회, 그리고 목회자와 신도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통한 통합의 관점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이 것 차이는 세금 납부의 여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변화시키며, 법의 정의와 기독교의 사랑을 내면화하는 성숙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사회가 도덕적인 질서를 보존하며 교회와 법이 서로의 가치를 배려해 줄 때, 기독교의 선교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테스탄트와 개인주의와의 연결은 종교개혁정신, 즉 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아무런 방해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는 면에서 많이 부각되어왔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하여 나타난 개혁자들의 논점 핵심은 개인에 있기보다는 참된 교회에 관한 것으로서 성도의 교제, 즉 신

자들의 친교에 있었다.<sup>21)</sup> 즉,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사제’라는 ‘만인 사제설’은 ‘모든 사람은 그 이웃의 사제’라는 뜻을 기억하여야 한다.<sup>22)</sup> 신자는 자신의 사제가 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사제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코이노니아’의 삶인 것이다. 따라서 신약 성서의 교회는 코이노니아,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신을 이해하였고, 종교 개혁 또한 기독교인의 삶, 즉 윤리에 대한 기독교적 출발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통하여 시작한 것이다.

자신을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구하였던 잠언기자의 고백이 교회와 목회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유일한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세금의 짐이 아니라 이 복음의 거룩한 짐을 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존과 질서를 중시하는 온전한 통합의 원리로 목회자에게 세금을 원할 때, 목회자가 한 국가의 시민인 한 세금을 내는 데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유일한 사명은 영혼을 위한 ‘영적 짐’을 지는 것이다. ‘세금의 짐’도 져야만 한다면, 그것은 사회의 통합과 질서유지에 공헌하며, 어려움을 서로 함께 나누는 ‘짐’이 아닌 따뜻한 ‘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 과세’가 법의 형식을 넘어서서 이웃을 염려하고 함께 공감하는 성숙한 ‘조세문화’로 발전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

21) Paul Lehmann, *Ethics In A Christian Context* (Harper & Row, 1963). 『기독교 사회윤리 원론』 (심일섭 역, 대한기독교서회, 1988), 58.

22) 위의 책, 62.